

공 고

○과학기술처공고제1993-31호

기술용역대가의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1993년 6월 1일

과학기술처장관

기술용역대가의기준중개정

기술용역대가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제1조중 “기술용역육성법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업자가 국내에서 수수하는 기술용역에 대한 기술용역대가(이하 “대가”라 한다)”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이하 “대가”라 한다)”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적 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이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라 한다)가 동법 제5조제1항 각호의 자로부터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탁할 경우에는 이 대가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세계은행(IBRD), 아세아개발은행(ADB)등의 차관에 의한 용역사업(직접발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국내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수수할 경우에는 국제기준에 따라 대가를 산출할 수 있다.

제4조제2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기술용역”을 “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한다.

1. 건설부문 엔지니어링사업
2. 통신·정보처리부문중 전기통신분야 및 정보통신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
3. 산업관리부문중 소방설비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

제6조중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 별표 3의 건설부문중 관개배수 및 농지분야”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비고 6의 건설부문중 농어업토목분야”로 한다.

제9조의2중 “기술용역업자가 기술용역업무”를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하고, “기술용역대가”를 “대가”로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중 “기술용역비용”을 “비용”으로 한다.

제11조중 “기술용역업무”를 “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한다.

제13조중 “기술용역요율”을 “엔지니어링사업요율”로 한다.

제14조중 “기술용역노임단가”를 “엔지니어링사업노임단가”로 한다.

제17조 본문중 “용역업자”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하고, 단서규정중 “단, 산업설비용역업중 원자력산업부문기술료”를 “다만, 원자력발전분야의 기술료”로 한다.

제18조중 “기술용역업무”를 “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하고, “용역계약 당사자”를 “당사자”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기술용역노임단가”를 “엔지니어링사업노임단가”로 하고, 제3항중 “기술용역수행기간”을 “엔지니어링사업수행기간”으로 하며, 동조동항중 “기술용역”을 “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한다.

“별표 1”을 “[별표 1]”로 하고, 동표중 하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 “건설부문”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비고 6의 건설부문(농어업토목분야를 제외한다)과 산업관리부문중 소방설비분야를 말한다.

“별표 2”를 “[별표 2]”로 하고, 동표중 하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 “통신부문”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비고 6의 통신·정보처리부문(전기통신분야 및 정보통신분야에 한한다)을 말한다.

“별표 3”을 “[별표 3]”으로 하고, 동표중 “기술용역노임단가기준”을 “엔지니어링사업노임단가기준”으로 하며, 구분란중 “산업설비용역업”을 삭제하고, “원자력산업부문”을 “원자력발전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하며, “산업공장 및 종합환경부문”을 “산업공장분야 및 종합환경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하고, “종합건설기술용역업, 전문기술용역업, 개인기술용역업”을 “건설부문 및 기타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하며, 하단에 비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 1. “원자력발전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함은 원자력발전, 핵연료제조·가공 및 처리 등 원자력산업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을 말한다

제12428호

관 보

1993. 6. 1. (화요일)

다.		군	별	계	급	군	번	성	명
2. "산업공장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함은 화학비료공장, 무기약품 공장, 유기화학제품 공장, 연료 및 윤활유공장, 펄프·제지공장, 고분자제품공장, 전기화학공장, 요업공장, 기계공장, 금속공장, 전기·전자공장, 섬유공장, 수력·화력 등 발전소 및 송배전설비에 관한 엔지니어링사업을 말한다.		육	군	중	위		91-17578	조 광	목
		"	"	"	"	91-17582	조 태	천	
		"	"	"	"	91-17587	장 성	운	
		"	"	"	"	91-17588	고 진	상	
		"	"	"	"	91-17589	이 명	현	
		"	"	"	"	91-17591	한 성	희	
		"	"	"	"	91-17597	노 수	철	
		"	"	"	"	91-17599	송 호	택	
3. "종합환경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함은 대기, 소음, 진동, 폐기물, 해양 등 환경관리 및 자연자원의 보전과 환경개선에 관한 엔지니어링사업을 말한다.		"	"	"	"	91-17611	이 정	신	
		"	"	"	"	91-17612	황 창	근	
		"	"	"	"	91-17615	이 성	섭	
"별표 4"를 "(별표 4)"로 하고, 동표중 하단의 "(주) 1)"을 "비고:1"로 하며, 1)중 "기술용역		"	"	"	"	91-17618	이 석	준	
육성법 제2조(정의)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	"	"	"	91-17622	한 현	우	
(정의)에서 규정한 해당용역 업무를"을 "엔지니		"	"	"	"	91-17623	안 병	진	
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		"	"	"	"	91-17628	모 병	철	
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을"로 하고,		"	"	"	"	91-17629	나 재	호	
"2) 내지 4)"를 "2. ~ 4."로 한다.		"	"	"	"	91-17630	장 우	승	
부 칙		"	"	"	"	91-17634	계 승	관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	91-17635	최 권	주	
		"	"	"	"	91-17636	김 혁	중	
		"	"	"	"	91-17641	최 춘	식	
◎국방부공고제1993-7호		"	"	"	"	91-17642	김 낙	구	
제9기군법무관시보실무고시합격자		"	"	"	"	91-17644	김 남	선	
군법무관시보의임명, 수습및실무고시규정 제10조		"	"	"	"	91-17646	이 은	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9기 군법무관시		해	군	"	"	91-10812	최 성	수	
보 실무고시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	"	91-10820	김 막	막	
1993년 6월 1일		"	"	"	"	920056	김 영	석	
국 방 부 장 관		공	군	"	"	91-10705	강 명	구	
군	별	계	급	군	번	성	명	구	
육	군	중	위		91-17539	김 경	환	식	
"	"	"	"	"	91-17542	임 병	철	섭	
"	"	"	"	"	91-17553	허 남	정	삼	
"	"	"	"	"	91-17555	서 재	덕		
"	"	"	"	"	91-17557	강 길	부		
"	"	"	"	"	91-17559	조 인	호		
"	"	"	"	"	91-17561	김 의	형		
"	"	"	"	"	91-17563	최 충	현		
"	"	"	"	"	91-17564	황 병	희		
◎건설부공고제1993-87호									
산업교육진흥법 제3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의2(산학협동)에 의거 '93학년도 전문대학 학생 현									
장실습산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1993년 6월 1일									
현 장 실 습 학 교		현 장 실 습 대 상 업 체							
학 교 명	소 재 지 (시·군)	실 습 학 과	학 생 수	실 시 기 간	산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등 록 및 면 허 기 관	관 할 중 앙 기 관
명지실업	서울 서대문구	기계	6	'93. 7. 5.	대한주택공사	서울 강남구	박부찬	서울시	건설부
전문대학	남가좌동	설 계 과		~7.31.		논현동 254			